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당국, 지진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

- 일본은행은 동일본 대지진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지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기준금리수준의 정책성 대출자금 1조엔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함.
 - 일본은행은 지난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지진피해지역에 영업소를 둔 금융회사가 긴급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금융회사일지라도 1년만기 0.1% 금리수준으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함.
 - 금번조치는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.
 - 일본은행은 과거 고베대지진(1995년) 당시 재해지역에 영업소가 있는 금융회사에 당시 기준금리인 1%로 5천억엔의 1년만기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.
-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지진피해지역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담보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완화조건 등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함.
 - 또한,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연 0%~0.1%로 동결하여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,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30조엔의 대출프로그램과 1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결정함.
- 한편 일본금융청은 대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일이 경과해도 불량채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상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채무기관 연장 특례조치를 금융회사에게 통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.
 - 대상기업은 지진 및 원전사고 피해를 입은 기업, 거래처가 재해 영향을 받은 기업,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된 기업, 정전으로 거래처가 조업하지 못한 기업 등임.
 - 또한, 금융청은 기업이 금융회사에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경우 1년 단위로 기간을 제한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, 상장기업의 유가증권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함.

(아사히신문 4/1, 요미우리신문, 일본경제신문 4/7 종합)